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파워텍스러브연금보험

2. 보험의 세목(연금 지급형태)

| 구분 | 연금 지급형태 | |
|-----|---------|-------------------|
| 적립형 | 종신연금 | 보증기간부(10년, 20년) |
| | | 보증금액부 |
| 거치형 | 종신연금 | 보증기간부(10년, 20년) |
| | | 보증금액부 |
| | 확정연금 | 5년, 10년, 15년, 20년 |
| | 상속연금 | - |

3. 연금지급개시나이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입나이

| 구분 | 연금지급개시나이(Y) |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가입나이 | |
|-----|-------------|-------------------------|--------------------------|
| 적립형 | 45세 ~ 75세 | 5년납 | 만 15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13)세 |
| | | 7년납 | 만 15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14)세 |
| | | 10년납 | 만 15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16)세 |
| 거치형 | | 만 15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6)세 | |

단, 적립형, 남자의 최고가입나이는 5년납의 경우 61세, 10년납의 경우 56세까지 가능.

4. 보험기간

| 구분 | 보험기간 | |
|--------|---------------------------|-----------------------------|
| 제1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
| 제2보험기간 | 종신연금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 | 확정연금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 연금지급일까지 |
| | 상속연금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5.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 구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료 납입주기 |
|-----|----------------|----------|
| 적립형 | 5년납, 7년납, 10년납 | 월납 |
| 거치형 | 일시납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7.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적립형

(1) 보험료의 구분

①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②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외에 주가지수연동기간 경과 후부터 제1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

(2) 보험료 납입 한도

① 기본보험료

월보험료 10만원 이상

② 추가납입보험료

- a.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납입총액의 200% 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로 한다.
 - b. 'a'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국고채수익률(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 c.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a'의 한도를 적용한다.
-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 한도에서 제외한다.

나. 거치형

일시납보험료 500만원 이상

8. 주가지수 연동에 관한 사항

가. 주가지수연동기간 및 주가지수평가기간

- (1) 이 보험의 주가지수연동기간은 보험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계약해당일(이하 "주가지수연동기간시작일" 이라 한다)부터 다음의 기간으로 한다.

| 구분 | 주가지수연동기간 | |
|-----|----------|-----|
| 적립형 | 5년납 | 5년 |
| | 7년납 | 7년 |
| | 10년납 | 10년 |
| 거치형 | 10년 | |

단, 보험계약일의 다음 달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을 주가지수연동기간시작일로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거치형에서 주가지수연동기간 종료일이 연금지급개시일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주가지수연동기간을 5년으로 한다.
- (3) 이 보험의 주가지수평가기간은 보험계약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 중 회사가 정한 날(이하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로 한다)부터 매1년으로 하며, 회사는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을 보험계약 청약 전에 계약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4) '(1)' 내지 '(3)'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주가지수연동기간 중 매년 주가지수연동이율 또는 공시이율(이하 주가지수연동이율 및 공시이율을 "연동이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가지수연동이율 적용을 선택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주가지수연동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계약자가 주가지수연동이율 적용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해당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한다.
- (5) 계약자는 '(4)'에 의하여 연동이율의 적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래하는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의 5영업일 전까지 회사에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의 5영업일 전까지 변경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적용한 연동이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이 해지되어 '11.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에 따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 전일까지 도래한 매 주가지수평가기간에 해당하는 주가지수연동이율의 적용은 선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6) '(1)' 내지 '(5)'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가지수연동이율 적용을 선택할 수 없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 ① 매입하고자 하는 파생금융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구입자금 규모가 작아 해당 상품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
 - ② 매입하고자 하는 파생금융상품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하여 계약자에게 적정 수익을 제시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나. 연계주가지수

KOSPI200

다. 주가지수연동이율에 관한 사항

- (1) 매 주가지수평가기간 중 연계주가지수의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을 합산하여 주가지수연동이율을 산출한다. 단,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의 합은 0%를 최저 한도로 한다.

$$\text{주가지수연동이율(\%)} = \text{월간 주가지수 증감분의 합(\%)} \times \text{참여율(\%)}$$

(주) 주가지수연동이율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사용한다.

①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

매월 직전월 지수기준일의 연계주가지수의 증가(기준지수)와 매월 지수기준일의 연계주가지수의 증가(만가지수)를 기준으로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을 계산한다. 단, 월간주가지수증감분은 최고수익률과 최저수익률을 한도로 한다.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

$$= \text{Max} \left[\text{Min} \left\{ \frac{\text{만가지수} - \text{기준지수}}{\text{기준지수}} \times 100(\%), \text{최고수익률}(\text{cap}) \right\}, \text{최저수익률}(\text{floor}) \right]$$

(주) ■ 지수기준일: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로부터 매 1개월 경과해당일의 전일 (단, 매 1개월 경과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 말일을 지수기준일로 하며, 지수기준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인 경우 직전 증권시장 개장일로 한다)

- 만가지수 : 매월 지수기준일의 연계주가지수 증가
- 기준지수 : 직전월 지수기준일의 연계주가지수 증가(단, 최초 기준지수는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전일의 연계주가지수 증가로 하며,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전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인 경우 직전 증권시장 개장일의 연계주가지수 증가로 한다)
- 최고수익률(cap) :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 계산시 반영하는 수익률의 최고한도로 회사는 최초 주가지수평가기간을 제외하고 매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10영업일 전에 공지한다.
- 최저수익률(floor) : 월간 주가지수 증감분 계산시 반영하는 수익률의 최저한도로 회사는 최초 주가지수평가기간을 제외하고 매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10영업일 전에 공지한다.

② 참여율

월간 주가지수증감분의 합 중 실제 주가지수연동이율로 지급하는 비율로 회

사는 최초 주가지수평가기간을 제외하고 매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 10영업일 전에 공지한다.

- (2) ‘(1)’에 의해 산출된 주가지수연동이율을 다음의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주가지수연동이자”라 한다)을 매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이하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이라 한다) 기준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에 지급하며, 지급된 주가지수연동이자는 공시이율로 적립한다.

| 구분 |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 기준금액(Notional) |
|-----|----------------------------|
| 적립형 | 기본보험료 × [기본보험료 납입횟수 -1] |
| 거치형 | 일시납 영업보험료 |

기본보험료 납입횟수는 계약체결시부터 매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한 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납입해당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납입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3) ‘(2)’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이 속한 달과 주가지수평가기간 시작일이 속한 달이 동일한 계약의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횟수는 계약체결시부터 매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납입한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 (4) 주가지수연동이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된 날 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도래하는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의 주가지수연동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주가지수연동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 중 해지된 날 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계약자적립금은 ‘10. 계약자적립금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에 따라 확정이율(적립형 1.0%, 거치형 1.5%)로 적립한다.
- (5) 회사는 계약자에게 매년 주가지수연동이율 내역을 통지한다.

9.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공시이율의 적용

- (1) 보험계약일부터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계약건별로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는 보험계약일의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하고, 최초 주가지수평가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한다.

(2) 주가지수연동기간 이후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일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나. 공시이율의 산출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단,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1)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6 + A_0 - (I - E)} \times \frac{12}{6}$$

- (주) ■ I : 직전 6개월간 투자수익
- E : 직전 6개월간 투자비용
- A₆ : 산출시점 직전 6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₀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2)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 산출식} = B1 \times r + B2 \times (1 - r)$$

- (주) ■ B1 : 국고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단, 국고채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YTM)로 한다.
- B2 : 회사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단, 회사채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만

기) 시가평가기준수익률(YTM)로 한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가중이동평균이율(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_i(-3)$: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2)$: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1)$: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한다.

라. '가' 및 '나'에 의하여 운용되는 공시이율은 동종상품['가' 및 '나'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마.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자산의 경우, 공시 기준이율 산출식의 내부지표는 최초 특별계정 설정 후 1년간은 [외부지표]와 동일한 수치를 적용한다.

바.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10. 계약자적립금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가. 주가지수연동기간

- (1) 주가지수연동기간 중의 계약자적립금은 적립형은 연복리 1.0%, 거치형은 연복리 1.5%를 확정 적용하여 적립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연동이자 및 계약자가 주가지수연동이율 적용을 선택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은 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다.

나. 주가지수연동기간 이외의 기간

보험계약일부터 보험계약일의 다음 달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및 주가지수연동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는 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다.

11.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 가. 적립형의 경우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나. 주가지수연동이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어 '가'에 의하여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일 전일까지 도래한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 및 부활(효력회복)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에 해당하는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 전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을 이 계약과 동년 동월에 가입한 계약에 적용하는 공시이율로 적립한다.
- 다. '나'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연동이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이 해지된 날 이후 최초 도래하는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 이전에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최초 도래하는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일의 주가지수연동이자 지급하여 드리며 주가지수연동이자를 지급한 기간의 계약자적립금은 '10. 계약자적립금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에 따라 확정이율 1.0%로 적립한다.

12. 보험료(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제1보험기간 중 보험료(기본보험료)를 '7.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보험료(기본보험료) 한도 내에서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감액할 수 있다.

- 나. 계약자의 보험료(기본보험료) 감액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보험료(기본보험료)의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 라.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로부터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에는 보험료(기본보험료)를 감액할 수 없다.

13. 계약자적립금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일부터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

- (1)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에는 보험년도 기준 연2회에 한하여 주가지수연동이자의 누적금액 이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단, 1회 인출시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인출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인출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을 수수료로 부가할 수 있으며, 인출금액에서 차감한다.

나. 주가지수연동기간 이후

- (1) 계약자는 주가지수연동기간 이후부터 제1보험기간 동안에는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인출시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인출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인출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을 수수료로 부가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 (3)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다.
- (4)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단,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14.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설정

이 보험계약의 계약일로부터 주가지수연동기간 이내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의하여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한다.

나.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특별계정의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및 보험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1)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①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 ②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 ③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①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②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③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④ 주가지수연동기간이 종료된 경우
 - ⑤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3) '(1)' 또는 '(2)'에 따라 자금이체시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 이자는 회사의 대출우대금리로 함

15. 기타

가. 추가보험료에 관한 사항

추가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일부터 제1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부리적립된 책임준비금을 연금지급개시시에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나. 연금지급형태의 복수선택

- (1) 계약자는 거치형에 한하여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복수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 (2) '(1)'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복수로 선택하는 경우 보험기간은 복수로 선택한 연금지급형태 중 가장 긴 보험기간으로 한다.
- (3) '(1)'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복수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선택하여야 하며,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은 연금개시시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10% 단위)로 선택하여야 한다.

다. 보험가입금액

- (1) 적립형 : 월납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Min{보험료납입기간, 10}
- (2) 거치형 : 일시납보험료의 100%

라.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마. 보험계약대출이율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바. 고액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적립형에 한하여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보험료의 1%를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단, 99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다.